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부분개정사항

(2011. 07)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지침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본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의 부분개정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중인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은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1. 07 개정]

page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2007	개정(안), 2011	비 고
	제2장 보도	제2장 보도	
28 36	2-8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2-8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마. 급경사보도에 대한 안전시설** 기존 보도의 종단선형경사가 1/12을 초과하는 불량한 곳 등에서 보행자의 낙상사고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시설물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보도 / 보도 폭 / 미끄럼 방지포장 / 안전손잡이 / 계단** 유 / 2m 이상 / 0 / 보도와 계단사이 설치 / 0 유 / 2m 미만 / 0 / 차도측 유효보도 끝 설치 / X 무 / - / 0 / 지역주민의견수렴을 통한 건물 벽, 담장 등에 선택적 설치 / X **1) 보도 미끄럼 저항기준 및 미끄럼 방지포장** (1) 보도의 기하구조 및 위험도를 고려했을 때 마찰력의 확보가 필요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설치하며, 일정 구간 내의 마찰계수가 일정한 값을 갖도록 구간의 유형별 설치 길이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2) 보도가 설치된 경우는 보도 포장의 미끄럼저항은 40BPN 이상이어야 하며, 보도가 없는 구간에서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미끄럼방지포장 편」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2) 안전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한다. 또한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 손잡이를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한다.	

page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2007	개정(안), 2011	비 고
		(2)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로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 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한다. (3) 손잡이의 지름은 3.2cm 이상3.8cm 이하로 한다.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cm 내외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3) 계단** (1) 보도의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한다. (2)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한다. (3)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한다.(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단 너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m 이상으로 하며,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한다. (6)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page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2007	개정(안), 2011	비 고
48	**2-10 유지관리** **나. 보도포장 교체** **1) 교체 주기** 보도포장은 형식이 다양하고 설치장소의 주변 환경 및 교통여건이 다양하여 일률적인 교체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 및 무분별한 교체 방지를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전국 16개 지역 257개 지자체 기술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도 포장의 교체 기준은 10년 정도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보도포장의 교체는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10년 이내의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포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노약자가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 또는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포장공법 및 형식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 24조의 8에 근거하여 '도로관리심의회'(동법 시행령 제 24조의 12에 근거한 소심의회) 혹은 이에 준하는 별도의 '보도정비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도록 한다. 심의회에서는 정략적인 보도 포장 상태 평가자료["2) 보도포장상태평가' 참조]등을 토대로 보도포장의 교체여부를 결정한다. 보도 포장의 재령이 10년이 지난 경우는, 심의회를 통하진 안더라도 보도 포장 파손 현황에 대한 보도 포장의 상태를 기록함으로써 기존 보도 포장에 상태에 대한 관련 근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2-10 유지관리** **나. 보도포장 교체** **1) 교체 주기** 보도포장은 형식이 다양하고 설치장소의 주변 환경 및 교통여건이 다양하여 일률적인 교체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보도포장은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보도포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노약자가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 또는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포장공법 및 형식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다. 보도포장의 교체는「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근거하여 '도로관리심의회'(동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한 소심의회) 혹은 이에 준하는 별도의 심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도록 한다. 심의회에서는 정략적인 보도 포장 상태 평가자료["2) 보도포장상태평가' 참조]등을 토대로 보도포장의 교체여부를 결정한다.	